

의안번호	제 286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5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5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조례에서 인용하는 「도서관법」 등 근거법령의 제명과 조항을 올바르게 변경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목적규정에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을 근거법령으로 추가하고 조례의 제정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(안 제1조)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(안 제2조)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약칭의 띄어쓰기, ‘호’의 문장표현, 용어 등 조문 정비(안 제4조~제6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서관법」 및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와 생활·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작은도서관”이란 「도서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.
2. “도서관자료”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”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.”를 “후원활동 장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위하여”를 “위한”으로, “구축에 노력해야 한다.”를 “구축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“(시행계획의 수립 등)”을“(시행계획의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종합발전계획 등”을 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서관법」에 따라 도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내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작은도서관”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·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으로 「도서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가목에서 정한 도서관 중 법 제31조에 의거 등록된 도서관을 말한다.</p> <p>2. “도서관자료”란 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, 필사자료, 시청각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, 전자자료,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(온라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서관법」 및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와 생활·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작은도서관”이란 「도서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.</p> <p>2. “도서관자료”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.</p>

인 자료를 포함한다)로서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.

제4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역주민 참여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.
3.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략)  
② 종합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·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6조(예산의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

제4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 
-----  
----- 후원활동 장려
3. -----  
-----  
-- 위한 -----  
---- 구축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 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-----  
-----  
-----.

제6조(예산의 지원 등) ① -----  
-----

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 
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  
원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  
----- 범위-----  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도서관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도서관”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·정리·보존·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·교양습득·학습활동·조사연구·평생학습·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도서관자료”란 인쇄자료, 필사자료, 시청각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, 전자자료,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(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)로서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.
3. ~ 8. (생략)

제4조(도서관의 구분) ① 도서관은 그 설립·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국립 도서관: 국가가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
2. 공립 도서관: 지방자치단체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
3. 사립 도서관: 「민법」, 「상법」,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

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공공도서관: 공중의 정보이용·독서활동·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.
  - 가.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
  - 나. 어린이, 장애인, 노인,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
2. ~ 5. (생략)

제36조(등록 등)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(이하 “설립자”라 한다)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,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·도지사나 시·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등록할 수 있다.

② ~ ⑥ (생략)

## □ 작은도서관 진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작은도서관”이란 「도서관법」 제4조제2항제1호가 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·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□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

제2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지방자치단체는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## 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「도서관법」이 전부개정(22. 12. 8.)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조항 등을 정비하고,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## ○ 작성자

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장 김 은 영